

#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OCIO연금솔루션 성장형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변경 사항: ①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6. 7. 9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	유의문구 삭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각각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삭 제〉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5. 29. 기준</u>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6. 2. 기준</u>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6. 2.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5. 31. 기준</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5. 31.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 합투자기구에 관 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5. 31.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 3년 경과내역 삭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트러스톤멀티에셋인컴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u>부책임용역 : 강지혜</u> <u>(2022.06.03~2023.03.02)</u>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트러스톤멀티에셋인컴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u>〈삭 제〉</u>
9.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전략, 투 자방침 및 수익구 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예 시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요 투자대상국가 의 현황 업데이트	<u>2025. 8. 31. 기준</u>  -	<u>2026. 5. 31. 기준</u>  <u>최근 기준으로 기재</u>
10.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 기구에 적합한 투 자자 유형	제4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 액(97.5% VaR 모형 사용) : <u>14.89%</u>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 액(97.5% VaR 모형 사용) : <u>15.59%</u>
13. 보수 및 수수 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 제4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	- -	<u>2026. 5. 29. 기준</u>  <u>2026. 6. 2. 기준</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 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 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

		<p>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p> <p>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u></p>	<p>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p> <p>다만, <u>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u>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6. 2.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6. 2.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6. 2. 기준</u>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5. 31. 기준</u>
-----------	------------	---	------------------------



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 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27기(2024.12.31)</u> <u>제26기(2023.12.31)</u>	<u>제28기(2025.12.31)</u> <u>제27기(2024.12.31)</u>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 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5. 31. 기준</u>